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8 호 2022. 4. 7.(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4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규모변경) 사항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6호[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및 지형도면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7호[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4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0호[명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 4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45호[2022년 울산 북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4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56호[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4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58호[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 5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67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74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규모변경)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규모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당초	변경	
제2022-1호	김현섭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5동 14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7-4번지	3.2 (100mm*1개)	당초	'17.04.03. ~ '22.04.02.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배수 관로 매설
					변경	<u>'22.04.03. ~</u> <u>'26.05.31.</u>	
제2022-2호	김임분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08번길 5-6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704-1번지	5 (120mm*1개)	당초	'20.08.20. ~ '22.05.07.	해수탕 운영을 위한 해수인배수 관로 매설
					변경	<u>'22.05.08. ~</u> <u>'26.05.31.</u>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76호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88호(2021. 12. 2.)로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동~농소 간 도로 및 오토밸리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접 매곡,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정주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복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면적 363,051㎡
4.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한영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 052-241-79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 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4,600,986.7		1,144,600,986.7		
주거 지역	소 계	67,763,823.1	증)305,236	68,069,05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6,457.9		506,45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24,452.7		12,724,452.7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87,913.9	증)161,201	36,949,11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28,027.4	증)105,820	11,733,847.4		
	준주거지역	6,116,971.2	증)38,215	6,155,186.2		
상업 지역	소 계	7,626,562.6		7,626,562.6		
	중심상업지역	372,425.0		372,425.0		
	일반상업지역	6,824,761.7		6,824,761.7		
	근린상업지역	164,375.9		164,375.9		
	유통상업지역	265,000.0		265,000.0		
공업 지역	소 계	82,086,360.5		82,086,360.5		
	일반공업지역	76,430,315.4		76,430,315.4		
	준공업지역	5,656,045.1		5,656,045.1		
녹지 지역	소 계	513,944,866.0	감)305,236	513,639,630.0		
	보전녹지지역	17,298,520.0		17,298,520.0		
	생산녹지지역	16,352,730.0		16,352,730.0		
	자연녹지지역	480,293,616.0	감)305,236	479,988,380.0		
관리 지역	소 계	62,276,464.9		62,276,464.9		
	보전관리지역	40,544,000.9		40,544,000.9		
	생산관리지역	12,832,003.0		12,832,003.0		
	계획관리지역	8,900,461.0		8,900,461.0		
농 립 지 역		283,130,267.1		283,130,267.1		
자연환경보전지역		43,644,421.0		43,644,421.0		
미 지 정 지 역		84,128,221.5		84,128,221.5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38호(2021.6.10.) GW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 천곡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3,051	-	363,051	100.0	
주 거 지 역	-	증) 305,236	305,236	8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1,201	161,201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05,820	105,820	29.2	
준주거지역	-	증) 38,215	38,215	10.5	
자연녹지지역	363,051	감) 305,236	57,815	15.9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01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li> </ul>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5,820	250	
			준주거지역	38,215	400~500	
			자연 녹지지역	57,815	100	

##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계	23	7,402 (1,150)	114,149 (32,644)	3	1,674 (80)	36,962 (1,594)	13	3,749 (1,070)	59,468 (31,050)	8	1,979	17,719
대로	1	1,070 (1,070)	31,050 (31,050)	-	-	-	1	1,070 (1,070)	31,050 (31,050)	-	-	-
중로	9	3,457 (80)	62,319 (1,594)	3	1,674 (80)	36,962 (1,594)	2	643	11,663	4	1,140	13,694
소로	14	2,875	20,780	-	-	-	10	2,036	16,755	4	839	4,025

주) 0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6	10~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변경	대로	2	76	29~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신설	중로	1	A	22~25	집산 도로	669	대2-76	중1-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B	22	집산 도로	357	중1-C	중1-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C	20~23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중1-B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A	18	집산 도로	428	중1-A	중1-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B	18	집산 도로	215	중1-A	중2-A	일반 도로			

주1) 0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주2) 대로2-76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B=8~18m, L=235m (대로2-76호선 폭원30m 미개설구간 개설)

주3) 중로1-C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B=20m, L=80m (도시개발구역 ~ 관문길 도로구간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781	중1-A	중1-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B	12	집산 도로	283	중3-A	소2-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46	대2-76	중2-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D	12	특수 도로	30	대2-76	소2-C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30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263	중1-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C	8	국지 도로	297	중1-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D	8	국지 도로	249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E	8	국지 도로	240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F	8	국지 도로	230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G	8	국지 도로	100	중1-B	소2-J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H	8	국지 도로	105	중1-B	소2-J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I	8	국지 도로	182	중1-B	중1-C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J	8	국지 도로	140	소1-B	소2-I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4	특수 도로	211	중2-A	소3-B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B	4	특수 도로	546	중1-B	중1-B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C	4	특수 도로	32	중1-B	1083번 지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D	6	특수 도로	50	대2-76	중2-A	보행자 도로			

주) ()는 구역 외 연장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	• 일부구간 노폭 확대 - B=10~30m → 29~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 • 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구역 외 사업)
-	중로1-A	• 노선신설 - B=22~25m, L=669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1-B	• 노선신설 - B=22m, L=357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1-C	• 노선신설 - B=20~23m, L=648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구역 외 사업)
-	중로2-A	• 노선신설 - B=18m, L=428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2-B	• 노선신설 - B=18m, L=215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A	• 노선신설 - B=12m, L=781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B	• 노선신설 - B=12m, L=283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C	• 노선신설 - B=12m, L=46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D	• 노선신설 - B=12m, L=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A	• 노선신설 - B=8m, L=2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B	• 노선신설 - B=8m, L=263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C	• 노선신설 - B=8m, L=297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D	• 노선신설 - B=8m, L=249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E	• 노선신설 - B=8m, L=24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F	• 노선신설 - B=8m, L=2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G	• 노선신설 - B=8m, L=10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H	• 노선신설 - B=8m, L=105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I	• 노선신설 - B=8m, L=182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J	• 노선신설 - B=8m, L=14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A	• 노선신설 - B=4m, L=211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B	• 노선신설 - B=4m, L=546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C	• 노선신설 - B=4m, L=32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D	• 노선신설 - B=4m, L=5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	증)1,276	1,276		
신설	B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	증)1,428	1,428		
신설	C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	증)1,305	1,305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276㎡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
B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428㎡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
C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1,305㎡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

## 2. 공간시설

###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 충 녹 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	증)19,077	19,077		
신설	A	녹지	경 관 녹 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	증)19,749	19,749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완 충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신설 A=19,077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녹지신설</li> </ul>
A	경 관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신설 A=19,749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녹지신설</li> </ul>

###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근 린 공 원	근 린 공 원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	증)11,141	11,141		
신설	B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	증)1,500	1,500		
신설	C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	증)1,395	1,395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신설 A=11,141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li> </ul>
B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신설 A=1,50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li> </ul>
C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신설 A=1,39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li> </ul>

### 3. 방재시설

#### 가.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우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	증)1,646	1,646		
신설	B	우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	증)2,202	2,202		

#### ■ 우수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지신설 A=1,64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지신설</li> </ul>
A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지신설 A=2,202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지신설</li> </ul>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59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363,051	-	363,051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3,051	-	363,051	100.0	
주 거 지 역	-	증) 305,236	305,236	8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1,201	161,201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05,820	105,820	29.2	
준주거지역	-	증) 38,215	38,215	10.5	
자연녹지지역	363,051	감) 305,236	57,815	15.9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01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li> </ul>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5,820	250	
			준주거지역	38,215	400~500	
			자연 녹지지역	57,815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계	23	7,402 (1,150)	114,149 (32,644)	3	1,674 (80)	36,962 (1,594)	13	3,749 (1,070)	59,468 (31,050)	8	1,979	17,719
대로	1	1,070 (1,070)	31,050 (31,050)	-	-	-	1	1,070 (1,070)	31,050 (31,050)	-	-	-
중로	9	3,457 (80)	62,319 (1,594)	3	1,674 (80)	36,962 (1,594)	2	643	11,663	4	1,140	13,694
소로	14	2,875	20,780	-	-	-	10	2,036	16,755	4	839	4,025

주)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6	10~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변경	대로	2	76	29~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신설	중로	1	A	22~25	집산 도로	669	대2-76	중1-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B	22	집산 도로	357	중1-C	중1-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C	20~23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중1-B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A	18	집산 도로	428	중1-A	중1-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B	18	집산 도로	215	중1-A	중2-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781	중1-A	중1-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B	12	집산 도로	283	중3-A	소2-C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C	12	집산 도로	46	대2-76	중2-A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D	12	특수 도로	30	대2-76	소2-C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30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263	중1-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C	8	국지 도로	297	중1-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D	8	국지 도로	249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E	8	국지 도로	240	중3-A	중3-A	일반 도로			

주1)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주2) 대로2-76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B=8~18m, L=235m (대로2-76호선 폭원30m 미개설구간 개설)

주3) 중로1-C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B=20m, L=80m (도시개발구역 ~ 관문길 도로구간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F	8	국지 도로	230	중3-A	중3-A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G	8	국지 도로	100	중1-B	소2-J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H	8	국지 도로	105	중1-B	소2-J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I	8	국지 도로	182	중1-B	중1-C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J	8	국지 도로	140	소1-B	소2-I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4	특수 도로	211	중2-A	소3-B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B	4	특수 도로	546	중1-B	중1-B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C	4	특수 도로	32	중1-B	1083번 지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3	D	6	특수 도로	50	대2-76	중2-A	보행자 도로			

주) ()는 구역 외 연장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노폭 확대 - B=10~30m → 29~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li> <li>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구역 외 사업)</li> </ul>
-	중로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B=22~25m, L=66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li> </ul>
-	중로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B=22m, L=357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li> </ul>
-	중로1-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B=20~23m, L=64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li> <li>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구역 외 사업)</li> </ul>

###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A	• 노선신설 - B=18m, L=428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2-B	• 노선신설 - B=18m, L=215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A	• 노선신설 - B=12m, L=781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B	• 노선신설 - B=12m, L=283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C	• 노선신설 - B=12m, L=46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3-D	• 노선신설 - B=12m, L=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A	• 노선신설 - B=8m, L=2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B	• 노선신설 - B=8m, L=263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C	• 노선신설 - B=8m, L=297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D	• 노선신설 - B=8m, L=249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E	• 노선신설 - B=8m, L=24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F	• 노선신설 - B=8m, L=23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G	• 노선신설 - B=8m, L=10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H	• 노선신설 - B=8m, L=105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I	• 노선신설 - B=8m, L=182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2-J	• 노선신설 - B=8m, L=14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A	• 노선신설 - B=4m, L=211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B	• 노선신설 - B=4m, L=546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C	• 노선신설 - B=4m, L=32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소로3-D	• 노선신설 - B=4m, L=50m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	증)1,276	1,276		
신설	B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	증)1,428	1,428		
신설	C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	증)1,305	1,305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 신설 A=1,27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li> </ul>
B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 신설 A=1,428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li> </ul>
C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 신설 A=1,30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신설</li> </ul>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 충 녹 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	증)19,077	19,077		
신설	A	녹지	경 관 녹 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	증)19,749	19,749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완 충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신설 A=19,077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녹지신설</li> </ul>
A	경 관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신설 A=19,749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녹지신설</li> </ul>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근린공원	근린공원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	증)11,141	11,141		
신설	B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	증)1,500	1,500		
신설	C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	증)1,395	1,395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근린공원	• 공원신설 A=11,141m <sup>2</sup>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
B	소공원	• 공원신설 A=1,500m <sup>2</sup>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
C	소공원	• 공원신설 A=1,395m <sup>2</sup>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신설

3) 방재시설

(가)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우수지	저류시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	증)1,646	1,646		
신설	B	우수지	저류시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	증)2,202	2,202		

■ 우수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우수지	• 우수지신설 A=1,646m <sup>2</sup>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지신설
A	우수지	• 우수지신설 A=2,202m <sup>2</sup>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지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86,393	-	-	86,393	
신설	5B	5B	3,698	-	북구 천곡동 902번지 일원	3,698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6B	6B	3,800	-	북구 천곡동 904-8번지 일원	3,800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7B	7B	4,719	-	북구 천곡동 906-3번지 일원	4,719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8B	8B	6,281	-	북구 천곡동 637-1번지 일원	6,28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1B	11B	5,595	-	북구 천곡동 910-1번지 일원	5,59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2B	12B	4,841	-	북구 천곡동 913-1번지 일원	4,84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3B	13B	5,035	-	북구 천곡동 912-2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4B	14B	5,035	-	북구 천곡동 916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5B	15B	5,265	-	북구 천곡동 916-10번지 일원	5,26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6B	16B	5,265	-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5,26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7B	17B	5,707	-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5,7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8B	18B	5,335	-	북구 천곡동 9147-11번지 일원	5,3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19B	19B	2,143	3	북구 천곡동 914-8번지 일원	2,14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0B	20B	4,894	-	북구 천곡동 922-1번지 일원	4,894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1B	21B	4,855	-	북구 천곡동 928-1번지 일원	4,85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4B	24B	5,753	-	북구 천곡동 952-12번지 일원	5,75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5B	25B	3,207	-	북구 천곡동 947-2번지 일원	3,2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6B	26B	3,021	1	북구 천곡동 952-1번지 일원	3,02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신설	27B	27B	1,944	1	북구 천곡동 946번지 일원	1,944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지계획 확정

■ 공동주택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88,725	-	-	88,725	
신설	1B	1B	25,487	-	북구 천곡동 산147-8번지 일원	25,48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신설	23B	23B	63,238	-	북구 천곡동 544-1번지 일원	63,238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 준주거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22,418	-	-	22,418	
신설	9B	9B	6,049	1	북구 천곡동 906-2번지 일원	3,320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4	북구 천곡동 632번지 일원	2,729	
신설	28B	28B	5,816	-	북구 천곡동 942번지 일원	5,816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신설	29B	29B	6,575	2	북구 천곡동 540번지 일원	6,57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신설	30B	30B	3,978	1	북구 천곡동 537-1번지 일원	1,709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3	북구 천곡동 536-10번지 일원	2,269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4,009	-	-	4,009	
신설	9B	9B	1,305	2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신설	19B	19B	1,276	2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신설	29B	29B	1,428	1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428	

■ 공원·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52,862	-	-	52,862	
신설	2B	2B	19,749	-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19,749	
신설	3B	3B	11,141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1,141	
신설	9B	9B	1,395	3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신설	10B	10B	16,735	-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6,735	
신설	19B	19B	1,500	1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신설	26B	26B	1,390	2	북구 천곡동 951-2번지 일원	1,390	
신설	27B	27B	952	2	북구 천곡동 948-6번지 일원	952	

■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3,848	-	-	3,848	
신설	4B	4B	1,646	-	북구 천곡동 900-2번지 일원	1,646	
신설	30B	30B	2,202	2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202	

■ 기타용지(종교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23,291	-	-	23,291	
신설	22B	22B	23,291	-	북구 천곡동 927-7번지 일원	23,291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5B,6B,7 B,8B,11 B,12B,1 3B,14B, 15B,16B, 17B,18B, 19B-3,2 0B,21B, 24B,25B, 26B-1,2 7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공동주택(아파트 제외)</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li> </ul> </li> <li>※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 이하</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1m지정</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층 이하</li> <li>(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li> </ul>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li> <li>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은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li> <li>담장 및 대문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 생울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권장한다.</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li> </ul>	

2) 공동주택용지(A)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B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5m지정, 소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통경·통풍측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형 태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 • 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 •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공동주택용지(B)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23B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5m지정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통경·통풍측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형 태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 • 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 •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준주거용지(A)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9B-1,9B-4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7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 •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준주거용지(B)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2 8 B , 29B-2, 3 0 B - 1 , 30B-3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10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 •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4)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9B-2, 19B-2, 29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 2조에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li> <li>-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규정에 의한 부대시설</li> </ul> </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외의 시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변 1~2m지정</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 준주거지역 : 7~10층 이하</li> </ul>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li> </ul>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1	22B 북서측 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23B 북서측 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로2-76호선, 중로 1-A호선, 중로 2-A호선, 중로 2-B호선,

2)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1	5B 서측, 6B 서측, 7B 서측, 8B 동측, 11B 남측, 12B 북측 및 서측, 13B 북측, 14B 동측 및 북측, 15B 북측 및 서측, 16B 북측 및 동측, 17B 서측 및 남측, 18B 남측, 19B-2 동측, 19B-3 동측 및 남측, 20B 서측 및 남측, 21B 남측 및 동측, 24B 북측 및 동측, 25B 북측 및 동측 및 서측, 26B-1 동측, 27B-1 동측 및 서측	건축한계선 1m 지정	중로 1-A호선 변, 중로 1-B호선 변, 중로 1-C호선 변, 중로 3-A호선 변, 중로 3-B호선 변, 중로 3-D호선 변
신설	1	1B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9B-1 서측 및 남측, 9B-2 남측, 9B-4 동측 및 남측, 28B 북측 및 서측 및 남측, 29B-1 북측 및 남측, 29B-2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30B-1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30B-3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2m 지정	대로 2-76호선 변 중로 1-A호선 변, 중로 1-B호선 변, 중로 1-C호선 변, 중로 2-A호선 변, 중로 3-C호선 변, 소로 3-B호선 변
신설	1	1B 동측, 23B 동측 및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5m 지정	중로 1-A호선 변, 중로 1-B호선 변, 중로 1-C호선 변, 중로 2-A호선 변, 중로 2-B호선 변

※ 그 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②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제1편 총 칙

####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침화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시행지침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구성)

- ① 건축부문의 지침은 4개의 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 부문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 민간부문, 제3편 공공부문으로 각각 해당 대지에 각각 적용한다.
- ② 지침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제4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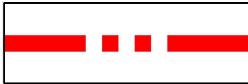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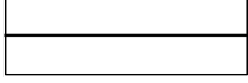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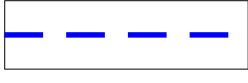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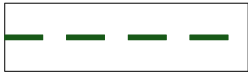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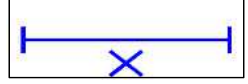
- ①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조례·지침에 따른다.
- ④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환지설계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특정한 용도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한계선”라 함은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된 선을 말한다.
  7. “건폐율”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8.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9.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0.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1.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건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한가지 이상의 색을 말한다.
  12.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
  13. “전면도로”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 제6조(도면표시방법)

본 지침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도면기호	색번호	비 고												
구역계			Color 10 (255,0,0)	-												
지적선			Color 250 (51,51,51)	-												
가구계획선			Color 10 (255,0,0)	굵은실선												
획지계획선			Color 7 (0,0,0)	굵은실선												
가구 및 획지번호	가구번호	1B	Color 10 (255,0,0)	가구 중심에 기재												
	획지번호	1	Color 5 (0,0,255)	획지 왼쪽 상단에 기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의 용도</th> </tr> <tr> <td>건축물 최대 용적률</td> <td>건축물 최고 높이/층수</td> </tr> <tr> <td>건축물 최대 건폐율</td> <td>건축물 최저 높이/층수</td> </tr> </table>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최대 용적률	건축물 최고 높이/층수	건축물 최대 건폐율	건축물 최저 높이/층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A</td> </tr> <tr> <td>200</td> <td>-m/5</td> </tr> <tr> <td>60</td> <td>-</td> </tr> </table>	A		200	-m/5	60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최대 용적률	건축물 최고 높이/층수															
건축물 최대 건폐율	건축물 최저 높이/층수															
A																
200	-m/5															
60	-															
건축한계선	1.0m이격		Color 210	170번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한계선 거리에 따라 색상별로 표시												
	2.0m이격		Color 170													
	5.0m이격		Color 88													
차량출입불허구간			Color 170 (0,0,255)	-												

## 제2편 민간부문

### 제1장 획지(대지)에 관한 사항

제7조(획지(대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함
- ② 획지(대지)의 분할·합병은 입지여건 및 택지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 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필지로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허용용도)

- ①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③ 준주거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준주거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④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허용한다.

제9조(불허용도)

- ① 각 용지별로 허용용도외의 시설의 입지는 제한한다.
- ② 준주거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은 입지를 불허한다.

### 제3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10조(건폐율)

- ① 건축물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 ②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6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50% 이하
  - 준주거용지 : 60~7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
- ③ 도면표시방법 : 건폐율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하단에 명기한다.

(예시) 건폐율 60% 이하

60%	

#### 제11조(용적률)

- ① 건축물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따른다.
- ②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20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250% 이하
  - 준주거용지 : 400~50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
- ③ 도면표시방법 : 용적률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상단에 명기한다.

(예시) 용적률 200% 이하

200%	



제12조(건축물의 높이)

- ① 건축물의 최저 및 최고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대지는 지정된 층수(지상층 말함)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용지 : 25~30층 이하
  - 준주거용지 : 7~10층 이하
  - 주차장 : 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준주거지역 7~10층 이하
- ② 각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교차로 및 간선도로변, 단지내부의 건물높이를 조화롭게 건축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층수로 규제하며, 상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상부에, 하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 하부에 각각 명기한다.

	4층
	-

(예시) 4층 이하    최저제한 없음

### 제4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축물의 배치)

- ① 단독주택용지는 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도록 하며,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하도록 한다.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통경·통풍축이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혼합 배치하되,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한다.
- ④ 준주거용지는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⑤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건축한계선)

- ①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단독주택용지 도로변으로 1.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②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준주거용지변으로 2.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③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변으로 5.0미터 건축한계선을 두어 오픈스페이

스를 확보하도록 한다.

- ④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에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녹지공간의 조성 및 블라드, 벤치, 조형물, 자전거도로 등의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한다.

## 제5장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1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붕형태는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을 권장한다.
  2. 외벽이 10m이상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입면에 굴곡 또는 돌출형태의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3. 조망차폐 및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외부 마감 및 색채에 통일감을 형성토록 한다.
- ②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하며,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2. 1~4층의 저층부는 목재, 점토벽돌, 황토벽돌 등 자연재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3.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이상으로 권장한다.
  4. 옥탑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을 권장한다. 단,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5.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③ 준주거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의 성격과 가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한다.
  2.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하고,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될 수 있도록 한다.
  3.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제16조(건축물의 색채)

- ① 주거지역내 건축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주조색은 화려하지 않은 색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 색깔은 다음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등 색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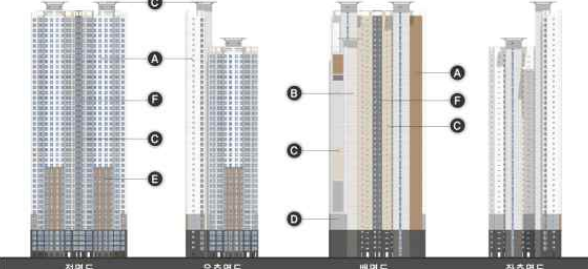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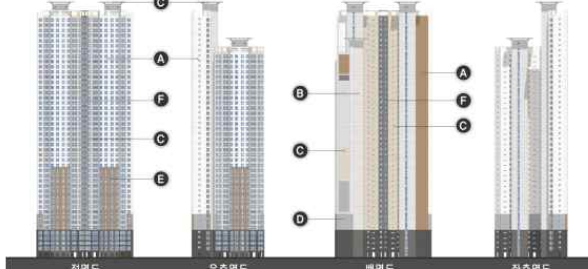
■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

■ 준주거 건축물의 색채계획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r> <tr><td>A</td><td>B</td><td>C</td></tr> <tr><td>2.5Y 8/2</td><td>N8</td><td>7.5BP 5/2</td></tr> <tr><td></td><td></td><td>9Y 5/2</td></tr> <tr><td></td><td></td><td>2.5Y 4/4</td></tr> </tabl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2.5Y 8/2	N8	7.5BP 5/2			9Y 5/2			2.5Y 4/4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r> <tr><td>A</td><td>B</td><td>C</td></tr> <tr><td>5YR 9/1</td><td>5Y 8/2</td><td>5Y 6/2</td></tr> <tr><td></td><td></td><td>5Y 7.5/2</td></tr> <tr><td></td><td></td><td>2.5Y 6/2</td></tr> </tabl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5YR 9/1	5Y 8/2	5Y 6/2			5Y 7.5/2			2.5Y 6/2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r> <tr><td>A</td><td>B</td><td>C</td></tr> <tr><td>N8</td><td>5Y 8/2</td><td>2.5Y 3/2</td></tr> <tr><td></td><td></td><td>2.5BG 3/2</td></tr> <tr><td></td><td></td><td>7.5BG 4/2</td></tr> </tabl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N8	5Y 8/2	2.5Y 3/2			2.5BG 3/2			7.5BG 4/2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r> <tr><td>A</td><td>B</td><td>C</td></tr> <tr><td>6.5Y 8.5/1</td><td>10GY 8/2</td><td>10Y 6/2</td></tr> <tr><td></td><td></td><td>N7</td></tr> <tr><td></td><td></td><td>2.5G 4/2</td></tr> </tabl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6.5Y 8.5/1	10GY 8/2	10Y 6/2			N7			2.5G 4/2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2.5Y 8/2	N8	7.5BP 5/2																																																													
		9Y 5/2																																																													
		2.5Y 4/4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5YR 9/1	5Y 8/2	5Y 6/2																																																													
		5Y 7.5/2																																																													
		2.5Y 6/2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N8	5Y 8/2	2.5Y 3/2																																																													
		2.5BG 3/2																																																													
		7.5BG 4/2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6.5Y 8.5/1	10GY 8/2	10Y 6/2																																																													
		N7																																																													
		2.5G 4/2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1지구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2지구

<p>Type A</p>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h>기단부 색채</th><th>기</th></tr>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5YR 9/1</td><td>6.5Y 8.5/1</td><td>5Y 8/2</td><td>N7</td><td>10YR 6/4</td></tr> <tr><td></td><td></td><td></td><td>N5</td><td>차량색채</td></tr> <tr><td></td><td></td><td></td><td></td><td>차량색채</td></tr> </table>   <p>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p>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N5	차량색채					차량색채	<p>Type A</p> <p>I Color Palette</p> <table border="1"> <tr><th>Main Color</th><th>Sub Color</th><th>Accent Color</th><th>기단부 색채</th><th>기</th></tr> <tr><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td>5YR 9/1</td><td>6.5Y 8.5/1</td><td>5Y 8/2</td><td>N7</td><td>10YR 6/4</td></tr> <tr><td></td><td></td><td></td><td>N5</td><td>차량색채</td></tr> <tr><td></td><td></td><td></td><td></td><td>차량색채</td></tr> </table>   <p>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p>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N5	차량색채					차량색채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N5	차량색채																																															
				차량색채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N5	차량색채																																															
				차량색채																																															

## 제17조(담장 및 대문)

-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 및 대문 설치는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채 등은 본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제18조(부설주차장)

-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및 설치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 제6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대지내 공지)

- ① 건축선 등에 의하여 생겨난 공지는 녹지 및 화단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되,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출입구, 건물 진·출입구간이 설치되는 부분과 사면 발생 및 옹벽 설치 등의 지형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20조(대지내 조경)

- ① 대지내 조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도로변 : 지하고가 높은 낙엽활엽 교목과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교목을 식재한다.
  2. 공원·녹지 : 관상적 가치가 높은 화목류(수형·꽃·열매)와 경관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한다.
  3. 택지주변 : 지하고 및 녹음효과가 높은 낙엽활엽교목과 수관이 크고, 답압에 잘 견디는 수목을 식재한다.
- ②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만들고, 배롱나무와 같은 녹음식재를 실시한다.
  3. 동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 및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분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4.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

리하도록 설계한다.

- ③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7장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 제21조(옥외광고물)

- ①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② 판류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 제3편 공공부문

### 제1장 도로시설물

#### 제22조(자전거도로)

- 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종점부 유색(적색) 포장을 하도록 하며, 100m 간격 노면 표시 및 200m 간격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 횡단로 설치(적색포장) 및 자전거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 제2장 교통시설물

#### 제23조(버스정차대)

- ①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이용 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과속방지시설)

- ①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②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③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 제25조(횡단보도)

- ①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각각부의 끝단에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고 험프형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② 횡단보도의 구조
  -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는 6m내지 10m, 국지도로는 4m내지 6m로 한다.
- ③ 보도의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 제26조(교통신호등 설치기준)

- ① 설치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3장 포 장

### 제27조(조성기준)

- ①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8조(차도포장)

-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

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③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로접속구간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보도포장)**

- ① 주요시설지 내 포장은 투수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투수콘포장 또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포장으로 계획하여 상징적인 공간감을 부여한다.
- ② 횡단보도 주변에는 턱없는 경계석과 점자블록 설치한다.

**제4장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30조(안내체계 설치원칙)**

- ① 광역, 주요시설, 주유가로 순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설치 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기준)**

- ① 표지판에 표기할 지명은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인지되어야 한다,
- ② 명명체계의 우선순위는 직역, 시설, 가로, 단지 순으로 하고, 위계별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하나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할 명칭이 중복될 경우 상위 위계순으로 표기하되 필요시 2개의 명칭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행도중 연속된 안내가 되도록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다음 표와 같이 명명한다.

구 분	표시내용	명명원칙
주요 지역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변, 주요 전면공지에 배치</li> <li>• 거리 및 도시이름 표기</li> </ul>
주요 시설	시설명, 주요지역명, 방향, 교통시설 환승법, 대표적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도가 높은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기</li> <li>• 공공 및 생활시설편의시설을 위한 안내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표물을 활용·시설물의 2~3개 전방 교차로로부터 표기</li> </ul>
주요 가로	행선지명, 가로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방향의 가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 인접 단지명을 표기</li> <li>•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표기하고 남북(홀수), 동서(짝수)가로에 일련번호를 부여</li> </ul>
주요 단지	주차장위치, 단지방향, 지구내 가로망방향, 단지명(동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에 따라 단지명 부여</li> <li>• 동을 기본단위로 번호체계를 구성하되 단지별로 구분</li> <li>• 단지번호는 주출입구에서 시계방향으로 부여</li> </ul>

**제32조(교통안전 표지판)**

-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② 설치기준

1.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규제, 지시표지는 구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 표지는 위험지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전방에 배치한다.
3. 교차로 부분과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 ③ 배치의 원칙

1.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안전표지를 설치 시 도로변이나 접속도로로부터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도로 부토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제33조(도로표지판)**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② 설치기준

1.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설치방향은 차량이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③ 표기방법

1. 지역의 진행방향과 전방에서 교차할 도로의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34조(유도방향 안내판)**

① 구조, 형상 : 운전자의 시선높이를 감안하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 주요 교차로 및 주요 건축물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절점 부근에 집중 배치한다.

## ③ 표시내용

- 주요 목표지점명
- 주요목표지점까지 거리
- 가로명

**제5장 공원·녹지****제35조(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 제36조(공원·녹지계획)

- ① 공원·녹지공간을 체계화하여 환경악영향 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야간 이용의 활용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야간조명을 계획하도록 한다.
- ③ 안내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④ 포장재는 투수성 재료 및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⑤ 패턴은 과도한 패턴과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지역성, 상징성을 부여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주변 녹지 및 기존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 제6장 가로식재 및 가로장치물

### 제37조(기준 및 식재방식)

####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 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갖도록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구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가로구간의 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한다.

### 제38조(가로 장치물)

- ① 가로 장치물의 설치는 일관된 주제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② 도로성격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 등 통합 및 복합화 된 계획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와 기능간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7장 기타사항

### 제39조(출입구에 관한 사항)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경우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도록 한다.

##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부문

### 제40조(지침의 적용)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행위에 적용하도록 한다.

### 제41조(건축허가 및 심의)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건축허가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해당부분 위치 표기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임야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 ③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 제42조(지침의 조정)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준공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77호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22. 4.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9,682,956	100.00%	440,714,248	100.00%	48,968,708	11.11%
일반회계	487,378,027	99.53%	438,508,794	99.50%	48,869,233	11.14%
특별회계	2,304,929	0.47%	2,205,454	0.50%	99,475	4.51%
기타특별회계	2,304,929	0.47%	2,205,454	0.50%	99,475	4.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4,724	0.01%	59,900	0.01%	4,824	8.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7,967	0.06%	252,916	0.06%	55,051	21.77%
주차장특별회계	1,932,238	0.39%	1,892,638	0.43%	39,600	2.09%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비교증감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b>총 계</b>		<b>487,378,027</b>	<b>100.00 %</b>	<b>438,508,794</b>	<b>100.00 %</b>	<b>48,869,233</b>	<b>11.14%</b>
100	지방세수입	85,275,984	17.50 %	82,375,984	18.79 %	2,900,000	3.52%
110	지방세	85,275,984	17.50 %	82,375,984	18.79 %	2,900,000	3.52%
200	세외수입	24,433,520	5.01 %	25,363,646	5.78 %	△930,126	△3.67%
210	경상적세외수입	18,971,062	3.89 %	19,997,124	4.56 %	△1,026,062	△5.13%
220	임시적세외수입	4,567,858	0.94 %	4,471,922	1.02 %	95,936	2.15%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600	0.18 %	894,600	0.20 %	0	0.00%
300	지방교부세	28,800,000	5.91 %	18,175,000	4.14 %	10,625,000	58.46%
310	지방교부세	28,800,000	5.91 %	18,175,000	4.14 %	10,625,000	58.46%
400	조정교부금등	53,917,880	11.06 %	53,917,880	12.30 %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3,917,880	11.06 %	53,917,880	12.30 %	0	0.00%
500	보조금	278,805,925	57.21 %	248,431,805	56.65 %	30,374,120	12.23%
510	국고보조금등	166,399,433	34.14 %	162,380,864	37.03 %	4,018,569	2.47%
520	시·도비보조금등	112,406,492	23.06 %	86,050,941	19.62 %	26,355,551	30.63%
600	지방채	1,150,000	0.24 %	1,150,000	0.26 %	0	0.00%
610	국내차입금	1,150,000	0.24 %	1,150,000	0.26 %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94,718	3.08 %	9,094,479	2.07 %	5,900,239	64.88%
710	보전수입등	13,819,329	2.84 %	8,000,000	1.82 %	5,819,329	72.74%
720	내부거래	1,175,389	0.24 %	1,094,479	0.25 %	80,910	7.39%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 정 액		비교증감	
				기 정 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b>총 계</b>		<b>487,378,027</b>	<b>100.00 %</b>	<b>438,508,794</b>	<b>100.00 %</b>	<b>48,869,233</b>	<b>11.14 %</b>
010	일반공공행정	21,095,724	4.33 %	20,236,310	4.61 %	859,414	4.25 %
020	공공질서및안전	2,626,353	0.54 %	2,336,439	0.53 %	289,914	12.41 %
050	교육	1,921,356	0.39 %	1,870,460	0.43 %	50,896	2.72 %
060	문화및관광	30,995,828	6.36 %	28,397,875	6.48 %	2,597,953	9.15 %
070	환경	14,274,775	2.93 %	13,459,347	3.07 %	815,428	6.06 %
080	사회복지	261,027,732	53.56 %	231,167,829	52.72 %	29,859,903	12.92 %
090	보건	17,237,560	3.54 %	16,505,714	3.76 %	731,846	4.43 %
100	농림해양수산	28,916,928	5.93 %	26,076,213	5.95 %	2,840,715	10.89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51,073	0.71 %	2,906,306	0.66 %	544,767	18.74 %
120	교통및물류	9,372,154	1.92 %	5,097,357	1.16 %	4,274,797	83.86 %
140	국토및지역개발	28,543,703	5.86 %	23,114,523	5.27 %	5,429,180	23.49 %
160	예비비	3,536,018	0.73 %	3,473,770	0.79 %	62,248	1.79 %
900	기타	64,378,823	13.21 %	63,866,651	14.56 %	512,172	0.80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79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1길 25-1	진장명촌지구 7B 2L	2022. 4. 7.	건축물 멸실
제내5길 42-1	신천동 251-4	2022. 4. 7.	건축물 멸실
제내5길 44	신천동 249-4	2022. 4. 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4.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80호

# 명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및 풍수해 영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2. 4. 7. ~ 2022. 4. 21. (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2. 4. 7. ~ 2022. 4. 21. (14일간)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 청취)

## 6.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 개요			지정 사유	비고
		면적(m <sup>2</sup> )	유형	등급		
명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일원	523,000	침수	가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월류 및 우수관거 통 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주거지 및 공장지대 상습침수 발생	신규

##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명촌	2023년 이후	4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수로 L=2,100m</li> <li>· 배수펌프장 Q=2,400m<sup>3</sup>/min</li> <li>· 우수관거정비 L=226m</li> <li>· 지방하천 정비 391m</li> <li>· 펌프장증설 Q=300m<sup>3</sup>/min</li> <li>· 배수문 설치</li> </ul>	신규

※ 사업 시기 및 사업내용은 현장 여건 및 예산(국·도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불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 편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52) 241 - 7832 · 팩 스 : 052) 241 - 78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불임 1. 명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안)  
2. 지형도면(세부)  
3. 주민의견 제출서(명촌지구)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445호

# 2022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2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 사실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위탁사무 : 2022년 울산 복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수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사)한국석면안전협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6, B동 16층	김 규 찬	

3. 수탁기간 : 협약일 ~ 2022.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56호

#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나. 명 칭: 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687번지 일원

### 3.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8면, A=1,902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기간

가.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5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50(2019. 3. 21.)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제2019-175(2019. 7. 18.)호, 제2021-6(2021. 1. 14.)호, 제2021-207(2021. 9. 16.)호, 제2021-240(2021. 10. 28.)호, 제2021-307(2021. 12. 23.)호, 제2022-34(2022. 2. 17.)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3-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및 녹지 592 조성공사] 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7-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 사업면적 : 15,975.5m<sup>2</sup>

- 대3-38호선 : L=323m , B=25m

- 중3-438호선 : L=278m , B=12.5m

- 중2-549호선 : L=342m , B=15~18m

- 녹지(592) : A=2,574.8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대표 차기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신천로 55-21, 3층 301호 신천하람타운

5. 사업기간 : 2019. 3. 21. ~ 2022. 6. 30.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46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나. 명 칭: 강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 2. 위 치

- 지정: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산120번지 일원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291-1번지 일원

#### 3. 사업규모

- 지정: 도로개설(B=10m, L=251m, A=4,760m<sup>2</sup>)

- 변경: 도로개설(B=10m, L=251m, A=4,863.3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나. 주 소

-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76번길 21, 603호(달동)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2022. 6. 30.까지

####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